

[서식 예] 친자 감정신청서

감 정 신 청 서

사 건 2000 드단 000호 친생자관계존부확인

원고 신〇〇외1

피고 박△△외1

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.

- 아 래 -

- 1. 감정 대상
 - ο 원고 김 ○ (주민등록번호)
 - ο 원고 신 ○ (주민등록번호)
 - ο 피고 박 △ △ (주민등록번호)
- 2. 감정 사항

원고 김ㅇㅇ가 피고 박△△의 친생자가 아니라 원고 신ㅇ○의 친생자인지 여부

3. 감정인: 귀원이 적의 선정한 감정인

2000.0.0.

위 원고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○ ○ ○

○ ○ 가 정 법 원 (가사제○단독) 귀중



제출법원	수소법원	신청기간	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
			이나 그 기일전에도 할 수있음
			(가사소송법 제12조, 민사소송법 제262조제2항,
			제305조)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
감정의의의	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		
	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,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		
	증거조사임		
감정의대상	법규 : 외국법규, 관습		
	사실판단 : 교통사고원인, 노동능력의 상실정도, 필적·인영의 동일성,		
	토지ㆍ가옥의 임대료, 공사비, 혈액형,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		
기 타	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할		
	수 있음. 다만,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있기 전에 기		
	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감정의 진술있은 후에는 기피를 하		
	지 못함(민사소송법 제309조)		